

고 발 장

고 발 인 김경율
피고발인 추미애

2020. 10. 8.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종 휘, 김 태 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김경율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종휘, 김태환

피고발인 추미애

고발죄명 직권남용

고 발 취 지

고발인 김경율(이하 ‘고발인’이라고 합니다)은 피고발인 추미애(이하 ‘피고발인’이라고 합니다)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준엄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사건 관계인의 지위

고발인은 작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사회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입니다.

피고발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6.경에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으며, 2020. 1. 2.부터 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2020. 1.경 피고발인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하여 군무이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9. 28. 이들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피고발인의 아들, 피고발인의 전 보좌관들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9. 28. 위 혐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참고자료1.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 공보자료에는 기타 주요 의혹 관련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항목상 청탁금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 중 제8면

○ 법무부장관이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 B○○ 前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 결과, 본건 A○○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은 인정됨

<6. 14.자(병가 연장 관련) 보좌관과 법무부장관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

App	종류	날짜	본문	수신자	발신자
카카오톡	발신	생성 일시 : 2017-06-14 16:20:09	내용 : AOO 건은 처리했습니다. 의원실 인턴직원(***)은 내일부터 출근기로 했습니다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번호 : 010***** 이름 : BOO
카카오톡	발신	생성 일시 : 2017-06-14 18:16:19	내용 :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번호 : 010***** 이름 : BOO

<6. 21.자(정기 휴가 관련) 보좌관과 법무부장관의 메시지 수발신 내역>

App	종류	날짜	본문	수신자	발신자
카카오톡	수신	생성 일시 : 2017-06-21 16:06:40	내용 : D○○ 대위(지원장교님) 010*****	번호 : 010***** 이름 : BOO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카카오톡	발신	생성 일시 : 2017-06-21 16:07:28	내용 : 네^^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번호 : 010***** 이름 : BOO
카카오톡	수신	생성 일시 : 2017-06-21 16:32:09	내용 : A○○(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 (5시 30분까지 한의 원 있음)	번호 : 010***** 이름 : BOO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카카오톡	발신	생성 일시 : 2017-06-21 16:37:15	내용 :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번호 : 010***** 이름 : (법무부장관)	번호 : 010***** 이름 : BOO

위 공보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당시 보좌관에게 피고발인 아들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하여 2017. 6. 14. 및 2017. 6. 21.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직권남용 관련법리

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나.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

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 2800 판결 등 참조).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검토

가. 관련규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u>보좌직원</u> 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별표 4] <개정 2017. 12. 12.>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	정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둔 보좌직원으로서, 동법 별표 4에 따르면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한편,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15조 제3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해야 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하여 2020. 6. 14. 16:06경 보좌관으로부터 ‘A○○1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 날 18:16경 ‘소견서는 확보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피고발인 아들의 정기휴가와 관련하여 2020. 6. 21. 16:06경 보좌관에게 지원장교(D○○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전달하였

¹ 공보자료상 피고발인 아들을 지칭합니다.

으며, 보좌관은 위 메시지를 받고 1분 후 ‘네^^’라고 바로 답신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같은 날 16:32경 보좌관에게 ‘A○○(아들)랑 연락 취해 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보좌관은 위 메시지를 받고 5분 뒤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더 봐야해서 한번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9. 26. 서면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발인이 위 메시지만으로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발인이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것일 뿐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사적인 지시를 한 것은 피고발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2020. 9.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형수 위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중 제1호중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그림 2> 증 제1호증 증 제6면

6 제382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0년9월1일)	
<p>○박형수 위원 미래통합당에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p> <p>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니 새로운 사실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지요!</p> <p>○위원장 정성호 추미애 장관님, 이것은 박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p> <p>○법무부장관 추미애 예.</p> <p>○위원장 정성호 질의하십시오.</p> <p>○박형수 위원 만약에 병가 처리해 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더라면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장관님의 법률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p> <p>○법무부장관 추미애 만약에 아프지도 않은데 병가 처리를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p> <p>○박형수 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법률상으로.</p> <p>○법무부장관 추미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p> <p>○박형수 위원 장관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것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p> <p>○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단 실체가 우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아이가 실제 아팠나이겠고요, 둘째는 그 아픈 아이가 병원의 치료를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나 하는 것이고요. 그런……</p> <p>○박형수 위원 그것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p> <p>○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p> <p>○박형수 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p> <p>문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p> <p>만약 그 당시에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면 그 보좌관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장관님이 그때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더라면 장관님도 같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하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p>	<p>습니까?</p> <p>○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p> <p>○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p> <p>○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p> <p>○박형수 위원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겠습니다.</p> <p>이상입니다.</p> <p>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나오셨습니까?</p> <p>○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p> <p>○박형수 위원 사회수석께서요?</p> <p>○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예.</p> <p>○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사회수석께 질문을 하겠습니다.</p> <p>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p> <p>○박형수 위원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p> <p>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서 2014년 8월 28일 날에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 친동생에 대한 내사·고발을 했고 또 민정수석 감찰 등 이렇게 엄정한 감찰관 활동을 하다가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2016년 8월 29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p> <p>특별감찰관법 8조에 의하면 감찰관이 결원이 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p> <p>(영상자료를 보며)</p> <p>지금 저기 표를 보시면 그 4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p> <p>지금 빨간색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아, 빨간색이 안 나오는군요. 17년에 9억 6100만 원 그다음에 18년에 8억 3600만 원 등등.</p> <p>2018년 4월 27일에 또 직무대행을 맡았던 특별감찰과장마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공석이 됐습니다.</p> <p>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따지더라도 총 31억 1000만 원이</p>

위 회의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박형수 위원은 피고발인에게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발인은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사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지시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자신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데, 검찰 수사로 위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피고발인 아들의 병가 연장 및 휴가 연장이라는 사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보좌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1) 일반적인 직무권한

피고발인은 위 범행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5조 제3항).

따라서 국회의원이 보좌관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

무권한에 속합니다.

2) 직권의 남용

피고발인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과 관련하여 지원장교(D○○대위)의 휴 대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A○○(아들)랑 연락 취해 주세요(5시 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좌관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둔 보좌직원으로서,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무관하므로 이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내린 위 지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의무없는 일

보좌관의 법령상 의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보좌관에게 입법활동과 무관한 피고발인의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였고, 보좌관은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피고발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5. 결어

이상의 이유와 같이 피고발인이 보좌관에게 피고발인 아들의 병가 연장 및 휴가 연장이라는 사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보좌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의정활동이라는 형태를 갖추지도 않고, 지극히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법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폐단을 단절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바,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²

입 증 방 법

증 제1호증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참 고 자 료

1.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자료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고발대리위임장 | 1통 |

² 피고발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대표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간에 비추어, 범행지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추정되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20. 10. 8.

고발인의 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중 휘



변호사 김 태 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